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56호 2018. 8. 1.(수)

선 결	기관의 장

예 규

거창군 예규 제3호 거창군수 지시사항 관리 지침 3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8-91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7
- 거창군 고시 제2018-9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8
- 거창군 고시 제2018-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사천천) 9
- 거창군 고시 제2018-9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8-941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공고 12
- 거창군 공고 제2018-951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23
- 거창군 공고 제2018-95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6

거창군 공고 제2018-956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거창군 공고 제2018-957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알림 43
거창군 공고 제2018-965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4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수 지시사항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8년 8월 1일

거창군 예규 제3호

거창군수 지시사항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거창군수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시사항”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회의·보고·순방 등을 통하여 지시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지시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통보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시사항에 대하여 협조·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분) 지시사항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특별지시 : 지시의 중요도가 높은 사안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
2. 일반지시 :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3. 강 조 : 지시사항에 준하여 검토와 이행이 필요한 사항
4. 훈 시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공람을 통하여 주지와 수시 교육 등으로 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사항

제4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지시사항은 총괄부서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서에 통보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간은 군수 임기까지로 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통보) ① 간부회의 등 정규회의 시 지시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종합 정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결재·보고나 각종 보고회·평가회·대책회의·현장방문 시에 지시받은 사항은 지시사항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받은 간부공무원이 지시내용을 작성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지시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지시사항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관리카드(별지 서식)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를 내부전산망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지시사항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될 때에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지정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되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종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확인·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상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즉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또는 미착수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종결) 추진부서의 장은 지시사항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부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으로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에 따른다.

[별지 서식] **지시사항 추진현황 관리카드**

지시제목	지시제목 [HY헤드라인M 16]			
관리번호		지시일자 (지시장소)		보고기한
추진부서 (협조부서)			추진사항	
지시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기재 (한컴바탕 13)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한컴바탕 15) ○ (한컴바탕 13) ○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및 대책 ○ (한컴바탕 13) ○ ※ 현장정비 지시의 경우, 필요시 전·후 비교 사진 첨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100px; margin-right: 10px;"></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100px; margin-left: 10px;"></div> </div>			
향 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컴바탕 13)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오미자 재배)
2.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천 원)	사 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산83	당초	46,019	2,184	(당초) 6,424	2017. 6. 9. ~ 2018. 8. 31.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3길 11, 101동 801호(토담주택)	김태호
	변경	46,019	2,266	(변경) 17,754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7월 26일

거 창 군 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오미자 재배)
2.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사업비 (천 원)	사 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3-5	당초	6,680	4,339	(당초) 12,507	2017. 8. 24. ~ 2018. 8. 23.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항재들길 87-18	임종권
	변경	6,680	3,972	(변경) 17,688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7월 26일

거 창 군 수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주)한화건설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하 천 명 (하천등급)	사 천 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625번지 등 3필지	
	면 적	일시점용 : 112.0㎡(진출입로 106.0㎡, 관로매설 6.0㎡)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18년 7월 26일 ~ 2023년 7월 25일	
	목적 및 사유	현장사무소 건립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및 관로 매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27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232-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246-107	2009-12-28	2018-08-01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용길 13-12	2009-04-01	2018-08-01	마을 앞 황강 냇물에서 사금이 나왔고 용이 놀았다는 용소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3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용길 13-14	2009-04-01	2018-08-01	마을 앞 황강 냇물에서 사금이 나왔고 용이 놀았다는 용소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1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27	2009-04-01	2018-08-01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일곱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746-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23-114	2009-04-01	2018-08-01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80-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177	2009-04-01	2018-08-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82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2길 404-42	2009-12-28	2018-08-01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공고

거창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홍보를 위한 청년 사무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 근무지 : 거창읍 월천농어촌체험휴양마을, 북상면 빙기실 체험휴양마을
- 채용인원 : 2명 / 체험휴양마을 당 1명
- 채용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 담당업무

- 마을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활동 지도
-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마을사무 관리, 주민교육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과 경력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

4. 채용자격 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체험마을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고 상근직으로 근무할수 있으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제한 : 접수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7. 26.(수) ~ 2018. 8. 5.(일) / 10일간
- 접수처
 - 접 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응시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 ①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1층 귀농귀촌담당으로 제출 / 8. 3.(금) 18시까지
 - ② 이메일접수: miry35@korea.kr / 8. 5.(일) 20시까지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 통보 : 2018. 8. 6.(월)/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시, 장소 : 2018. 8. 7.(화) 15:00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사진 2매 : 지원서 제출전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를 응시원서에 붙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 각 1부
-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매 분량 이내 - 붙임서식)
- 자격증, 수료증,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합격등록 포기시는 차 순위 자로 합격결정
- 보 수 : 월 2,000천원 정도
 - 단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마을과 협의 결정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055-940-816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① 응시 번호	신청자	② 성 명 (한 자)	③ 주민등록 번호	(만 세)	⑤ 사 진 (3.5cm×4.5cm)
	④ 최종 학력	학교(졸업, 중퇴)			
⑥ 주 소					
⑦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⑧ 자격증		
⑨ 주요경력					
⑩ 병력관계			⑪ 거창군전입일		
<p>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아니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명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면서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p> <p>거창군수 귀하</p>					

----- (절취선) -----

응 시 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시험					
⑫ 응시번 호	⑬ 성 명	(한글)			⑮ 사 진 (반명합판)
		(한자)			
	⑭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붙임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⑤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
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내 용

2018. .

작성자 :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사업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농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리더·주민 등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 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적극성 등) ◦마을의 참여조직의 구성·운영여부 및 농촌관광참여가구 비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방문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재방문객수 및 재방문율(전년대비) ◦마을 매출액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8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 마을법인 운영, 등급 전부문 1등급마을, 평가 우수·시상 경력 등 * 감점 : 마을평가 미흡, 민원발생, 조성 10년차 이상 등 	
종합평가(100점)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채용대상자 선정(지원) 심사평가표(안)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체험지도사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으로서의 자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4	가점(10), 감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 유사경력 및 추가 관련 자격증 보유여부 * 감점 : 타 마을사무장근무시 불량 평가시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근로계약서(예시)

사용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장 ○○○은(이하 ‘을’이라 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본 계약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다.

I. 계약 당사자

사용자(갑)		근로자(을)	
사업자명	○○ 농촌체험휴양마을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		근로시작일	

II. 근로조건

제1조 [취업 장소 및 직무]

●취업장소 : ○○농촌체험·휴양마을

●취업직무 :

●근무부서 :

●직 위 : 각 회사내 직위 명시*

* 시원 대리 과장 팀장 등 각 회사내 실제 직위 반드시 명시

제2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자로 본다.

②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전 한 달 이내에 재연봉계약을 맺는다.

③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연봉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 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휴가]

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적용하며,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로 한다. 단,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서별/개인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토록 한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3:00 ~ 14:00

- ② 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갑’은 ‘을’과 합의하여 실시하되, 갑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시간 외 근로 요청시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기타 국가법정공휴일, 하기휴가 등은 정상근무일이지만 개인별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한다.

제4조 [임금] 임금은 총 연봉으로 지급하며 구체적 내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총연봉액 : 원/년 ◆ 월급여 : 원/월(A+B+C+D+E+F)

- | | | | |
|------------|-----|------------|-----|
| ① 기본급 : | 원/월 | ② 연장근로수당 : | 원/월 |
| ③ 야간근로수당 : | 원/월 | ④ 휴일근로수당 : | 원/월 |
| ⑤ 상여금 : | 원/월 | ⑥ 휴가수당 : | 원/월 |

- ① 상기 월급에는 기본급 외 월평균 연장근로수당(52시간), 야간근로수당(10시간), 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한다.
- ②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 ③ ‘갑’은 매년 ‘을’의 임금 책정 시 ‘을’의 근무평가, 근태, 고객서비스 등 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토록 한다.

제5조 [임금지급]

임금은 매 월 일()에 지급하되,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통장이체를 포함)으로 지급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포함)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갑’의 물품을 훼손 및 도난 시에는 민,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해지]

-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 ② '을'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을'이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실을 끼쳤을 때.

제8조 [준수사항]

- ① '갑'과 '을'은 본 연봉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 ②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 되며, 회사의 승인 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 ③ '을'은 근무 시 또는 퇴직 후라도 '갑'과 관련되는 영업비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습]

- ①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 수습 기간으로 한다. 단, 경력직의 경우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사용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적성이나 능력, 인간관계를 판단하여 본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기간과 임금 및 기타 금전의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갑'과 '을' 공히 본계약의 책임을 면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 위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 (인) [을] 사무장 ○○○ (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8.7.27. ~ 2018.8.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 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환급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4)

2018년 7월 27일

거 창 군 수

붙임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내역('18.07.27일 기준)

연번	과세번호	환급사유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환급결정일	시효완료 예정일	환급총액 (원)
계			19					137,070
1	106001-2013-06-1-250-003023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황**영	5110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3길 7, 103호 (전원아파트)	2013-10-17	2018-06-26	10,220
2	106001-2013-06-1-250-014418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김**화	870604-*****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183-28, 105동 209호 (학정동,두산군인아파트)	2014-01-13	2018-07-01	810
3	106001-2013-06-1-250-014952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백**중	501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33	2014-01-13	2018-07-01	1,530
4	106001-2013-06-1-250-015972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김**권	68032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안의도장골길 22	2013-12-09	2018-06-19	2,240
5	106001-2013-06-1-250-017351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조**훈	8505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2307호 (양정동,시청역롯데골드르즈)	2013-07-17	2018-06-27	1,940
6	106001-2013-06-1-250-019823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김**익	480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2, 101동 505호 (대천동,월배힐스테이트)	2014-01-13	2018-07-01	820
7	106001-2013-06-1-250-019831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표**흠	4905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32	2014-01-08	2018-07-01	1,810
8	106001-2013-06-1-250-019982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태	6007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23-23	2013-11-12	2018-07-01	6,210
9	106001-2013-06-1-250-020412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백**중	501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길 33	2014-01-13	2018-07-01	1,530
10	106001-2013-06-1-330-009196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준	850927-*****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남1길 13-3, 203호 (감삼동)	2014-01-08	2018-06-17	4,330
11	106001-2013-06-1-350-013187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차**식	57120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18	2013-08-13	2018-07-23	11,300

연번	과세번호	환급사유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환급결정일	시효완료 예정일	환급총액 (원)
12	106001-2013-06-1-360-016468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오**식	55040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병향길 68	2013-11-12	2018-07-01	5,360
13	106001-2013-06-1-370-015269	44 자동차세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정**용	5812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길 123-58	2013-10-17	2018-06-14	8,280
14	106001-2013-06-1-400-013454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김**택	48093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전3길 186	2013-11-12	2018-07-01	4,300
15	106001-2013-06-1-410-016808	41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범	35091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64-17	2013-12-09	2018-07-01	2,090
16	140001-2013-07-2-250-000180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 신고에 의한 환급)	조**주	711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6길 22, 203호 파라다이스	2013-07-18	2018-06-30	150
17	140001-2013-07-2-250-000201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 신고에 의한 환급)	추**옥	671016-*****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40	2013-07-18	2018-06-30	73,310
18	140001-2013-07-2-250-000354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 신고에 의한 환급)	이**순	5703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 104호 (소만주공아파트)	2013-07-18	2018-06-30	830
19	140001-2013-08-2-250-001031	72 타시군환급(국세 확정 신고에 의한 환급)	백**진	8812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34-14, A 동 203호 (삼성하이츠빌)	2013-08-20	2018-06-30	10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3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사업	거창읍 중앙리 154 번지 일원	3,230.0	3,192.0	1,630.675	3,261.35	거창군고시 제83호 (2011.11.10)	

2.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432	3,192					
1	거창읍 중양리	151-3	대	205	149		거창군			
2	거창읍 중양리	150-3	대	139	104		거창군			
3	거창읍 중양리	157-4	대	500	500		거창군			
4	거창읍 중양리	159-3	대	165	165		거창군			
5	거창읍 중양리	160-2	대	261	260		거창군			
6	거창읍 중양리	160-3	대	172	172		거창군			
7	거창읍 중양리	190-4	대	331	297		거창군			
8	거창읍 중양리	190-2	대	231	231		거창군			
9	거창읍 중양리	154	대	757	757		거창군			
10	거창읍 중양리	150-4	잡	443	396		거창군			
11	거창읍 중양리	152-8	잡	115	60		국(재무부)			
12	거창읍 중양리	152-6	잡	86	79		거창군			
13	거창읍 중양리	160-11	도	7	2		거창군			
14	거창읍 중양리	156-2	도	20	20		거창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실내체육관 명칭변경(당초 : 실내체육관 ⇒ 변경 : 거창군체육관)
- 나. 국민체육센터(탁구장) 운영시간 개정
(당초 : 오전 10시 ~ 오후 12시 ⇒ 변경 : 오전 10시 ~ 오후 10시)
- 다. 체육시설 감면사항,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제한 사항 개정
 - 사용료 감면사항 개정, 장애인체육활성화에 부합하는 우선순위 조정, 정치적·종교적 목적은 시설 사용 제한
- 라.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현실에 맞게 조정
 - 수영장 강습회원 강습비 10,000원 별도, 볼링장 락커 사용료 별도
- 마. 고제면문화체육회관 이용 법규 명시

4. 입법예고기간 : 2018. 7. 30. ~ 2018. 8. 20.(20일간)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전화 055-940-8737, 팩스 055-940-8729 또는 메일 pjc2503@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전화 055-940-8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체육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거창군체육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고제면문화체육회관”을 명시한다.

제6조 제①항 제1호 “나. 탁구장,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를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공휴일 포함)”와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로 변경한다.

제8조 제1호 중 “행사”를 “행사 및 경기”로, 같은 조 2호,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4. 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같은 조 7호,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활동이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에 ③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③ 고제면문화체육회관은 거창군체육관을 준용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항에 2호, 3호, 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②항에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4호, 5호, 6호와 ④항 6호와 ⑦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항 6. 거창군에 주민등록 된 세자녀 이상 가족 중 18세 이하 자녀

⑦ 제④항 각 호의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 표]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 포 츠 파 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u>거창군체육관</u> <u>고제면문화체육회관</u>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일 사용료	4,000			
	비 회 원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 수영강습비(월) : 10,000원 별도, 강습비는 할인적용 안함

※ 볼링장 락커비(월) : 더블 1,700원, 쓰리 2,500원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예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u></p>	<p><u>거창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u>실내체육관</u>,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u>부대시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거창군체육관</u>, ----- ----- ----- -----<u>부대시설</u> 및 <u>고제면문화체육회관</u>을 말한다.</p>
<p>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① 체육시간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민체육센터 가. (생략) 나. 탁구장,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u>공휴일 포함</u>)</p>	<p>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p> <p>1.----- 가.(현행과 같음)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u>공휴일 포함</u>)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u>공휴일 포함</u>)</p>
<p>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u>행사</u></p> <p>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u></p> <p>3. (생략) 4. <u>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u> 5.~ 6.(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u>행사 및 경기</u></p> <p>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u>필요한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u></p> <p>3. (현행과 같음) 4. <u>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u> 5.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p>

현행	개정안
<p>제9조(사용제한)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1조(사용료)</p> <p>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u></p> <p>3. <u>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4. <u>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u></p> <p>5. (삭제 2015.9.23.)</p> <p>②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p>	<p><u>체육활동 및 행사</u></p> <p>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①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제한) ----- ----- ----- -----.</p> <p>1. ~3.(현행과 같음)</p> <p>4. <u>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활동이 인정될 경우</u></p> <p>제11조(사용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은 거창군체육관을 준용한다.</u></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 ----- -----.</p> <p>1.(현행과 같음)</p> <p>2.~ 4.(삭제)</p> <p>②-----</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p>	<p>-----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p>
<p>1.~3.(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3.(현행과 같음)</p> <p>4.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p> <p>5.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6.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p>
<p>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p>	<p>④----- ----- ----- -----.</p>
<p>1.~5.(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5.(현행과 같음)</p> <p>6. 거창군에 주민등록된 세자녀 이상 가족 중 18세 이하 자녀.</p> <p>⑦ 제④항 각 호의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p>

현 행

[별 표]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 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일 사용료	4,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공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개 정 안

[별 표]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 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u>거창군체육관</u> <u>고제면문화체육회관</u>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일 사용료	4,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공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현 행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신설>

개 정 안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 수영강습비(월) : 10,000원 별도, 강습비는 할인적용 안함
 ※ 볼링장 락커비(월) : 더블 1,700원, 쓰리 2,500원 별도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7. 30.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7. 30. ~ 2018. 08. 17.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주)품광1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1 45/경상남 도2017-373 호)	발전소명	(주)품광1호 태양광발전소	품광1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오 해 석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위천면 덕거길 151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18-1 (토지 위)	
	설비용량	599.76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1. 01.	
	양수(예정)일	2018. 07. 30.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둔기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고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8. 1. ~ 2018. 8. 15.(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1.

거 창 군 수

별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내역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지분	㎡당 가격	조정내역				납부금액 (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시송 달사유
시군구	읍면	리	지번	지 목	면 적 (㎡)	지번	지 목	면적 (㎡)			증		감			주소	성명	
											면적 (㎡)	금액(원)	면적 (㎡)	금액 (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094	대	192	1094	대	229.7		24,000	37.7	904,800			2,096,20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김*순	이사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43-1	대	211	1143-1	대	243.2		37,000	32.2	1,191,400				대전광역시 대덕 구 한밭대로988 번길	이*화	이사감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031	답	268	1031	답	355.9		13,000	87.9	1,142,700			1,211,6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김*연	폐문부채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032	전	502	1032	전	450		13,000			-52	676,000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033	답	770	1033	답	827.3		13,000	57.3	744,900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827	전	245	827	전	255		12,000	10.0	120,000			120,00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홍*규	이사감